

제398회 국회(임시회)

정무위원회

국민권익위원회

주요 업무 현황

2022. 7. 27.



국민권익위원회

목 차

I. 기관 일반 현황	1
II.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	4
① 반부패 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·공정 문화 확산	4
②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 구제	7
③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·제도 완성	10
III. 주요 현안 사항	13
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	13
②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	14

I. 기관 일반 현황

- ◇ 국민권익위원회는 ▲ 국민고충처리위원회, ▲ 국가청렴위원회, ▲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3개 기관을 통합하여 출범('08.2)
- ◇ 민원·질의·신고·심판청구 등 권익구제 기능이 기존 3개 위원회로 분산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 및 행정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권익위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

① 기능

부패 방지

반부패·청렴

- 반부패·청렴 정책 수립 및 청렴교육
- 청탁금지·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
- 공공기관 청렴도평가·부패영향평가

신고처리·신고자보호

- 부패·공익신고 처리
- 신고자 보호·보상 제도 운영
-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

권익구제

고충처리

- 고충민원 처리 및 집단민원 조정
- 민원처리 실태 확인·평가
-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지원

행정심판

- 행정심판제도 총괄·조정
- 행정심판 사건 처리
-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 운영

국민소통·제도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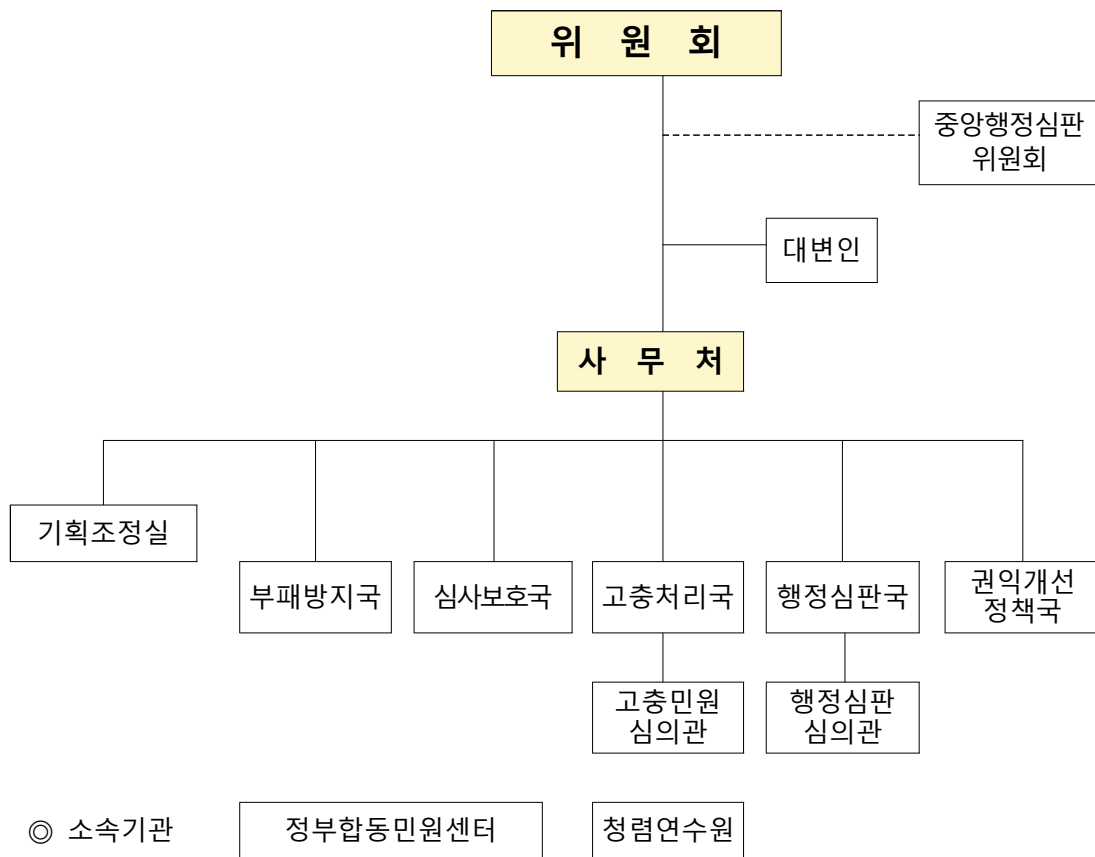
-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
- 민원 빅데이터 분석·정책환류
- 디지털 국민신문고·국민생각함 운영
- 정부합동 민원안내·상담 및 국민콜110

② 위원회 구성 및 조직

□ 위원회 : 15인(위원장, 부위원장 3, 상임위원 3, 비상임위원 8)

※ 중앙행정심위는 위원장(부위원장 1명 겸임) 포함 70인 이내로 구성(상임위원 4인 이내)

□ 사무처 : 1실 5국 2관 1대변인 41과 4팀 2소속기관



□ 정원 : 568명(현원 : 552명)

(단위 : 명, '22.6.30.기준)

구분	계	정무직	고공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이하	기타
정원	568	4	17	14	35	42	209	235	12
현원	552	4	17	15	33	43	208	223	9

3 예산

□ 총 933억원 : 인건비482억(52%), 기본경비 79억(8%), 주요사업비 371억(40%)

※ 주요사업비 : 37,140백만원

- 청렴권익문화확산 2,021백만원
- 청렴권익행정정보화 8,752백만원
-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,221백만원
- 부패·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11,266백만원
- 국민고충해소 1,331백만원
-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,473백만원
- 행정심판 1,076백만원

4 소관 법령

종류	법령명
법률 (6)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	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
	공익신고자 보호법
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
	행정심판법
대통령령 (9)	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	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	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
	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
	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	행정심판법 시행령
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
	공무원 행동강령
	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
총리령 (3)	행정심판법 시행규칙
	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
	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II. 2022년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

① 반부패 정책 강화를 통한 청렴·공정 문화 확산

(1) 부패·불공정 요인 개선 및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

□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

- (채용비리 근절)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설치, 행정기관 비공무원(공무직 등) 공정채용 표준지침 마련('23.1월) 등 공정채용 기반 강화·확산
※ 공직유관단체('21년 채용·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,212개) 채용실태 전수조사(~10월)
- (부패유발 법규 개선) 공공기관 사규(~12월)·지자체 자치법규(22.7월~23.12월)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불공정 규제에 의한 부패유발 요인 정비

□ 반부패 행위규범 내재화 및 청렴역량 강화

- (행위규범 내재화) 청탁금지법('16년 시행), 이해충돌방지법('22년 시행) 등 반부패 행위규범 운영을 내실화해 공직사회 내 청렴문화 안착
※ 공직자 교육, 워크숍 등 소통 강화(연중),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이행 점검('22.하반기)
- (종합청렴도 평가) 각급기관의 업무처리 과정의 부패인식·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 성과를 포함한 공공기관 청렴수준 종합 평가('22년~)
※ 총 573개 기관(중앙부처 46개, 지자체 243개, 공공기관 199개 등) 대상 평가 진행
청렴도 저조기관(4~5등급)은 청렴컨설팅으로 맞춤형 개선안(조직문화,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) 제공
- (청렴교육 강화) 청렴교육이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* 및 법정 청렴교육(연 2시간) 이행관리** 강화
* 고위공직자, 공기업(청렴윤리경영), 공정채용 등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발·제공
** 기관별 의무교육(연 2시간) 이수실적을 점검, 저조 기관에 대한 특별교육 등 조치('22.하)

(2) 부패·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적극적 신고 처리

□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

○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 및 지원체계로의 전환

- (보호·보상제도 일원화) 5개 법률*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신고자 보호·보상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해 법 적용 혼란 방지('22.말 국회제출)

* 부패방지권익위법, 공익신고자 보호법, 공공재정환수법, 이해충돌방지법, 청탁금지법

< 현행 반부패 신고 관련 보호·보상 규정 차이 >

구 분	부패방지 권익위법	공익신고자 보호법	청탁금지법	공공재정 환수법	이해충돌 방지법
불이익조치 절차 일사정지	○	×	×	×	×
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	○	○	○	×	○
구조금	○	○	○	×	○
보상금 지급대상	권익위에 신고한 자	내부 신고자	모든 신고자	모든 신고자	모든 신고자
보상금 지급요건	공공기관 수입 회복	국가지자체 수입 회복	공공기관 수입 회복	공공기관 수입 회복	공공기관 수입 회복

- (신고자 보상금 상향) 구간제(공익신고 4~20%, 부패신고 4~30%)로 규정된 보상금 지급률을 30%로 하고, 상한액(30억)을 조정·폐지하여 보상 강화

※ 보상금 = 보상금 지급대상 가액(공공기관의 수입 회복·증대 금액) × 지급률

○ 실질적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호제도 사각지대 해소

- (신고자 색출 금지) 신고자 신분을 공개·보도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·지시한 자도 처벌하는 규정 마련

- (변호사 조력범위 확대)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에 따른 조력범위를 신고 접수 이후의 조사, 보호·보상신청 등에도 확장

- (대상법률 확대)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(국민안전, 금융 등) 들을 발굴하여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함으로써 보호 범위 확대

※ 신고자 보호·보상규정 단일법 마련 시 관련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개정 추진

□ 부패·공익신고의 적극적 처리

- (온라인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) 비실명 대리신고를 현재 오프라인 방식에서 「청렴포털」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확대('22.7월~)
- 부패·공익신고 활성화 및 부패·공익 현안 등에 적극 대응
 - (집중신고)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패·공익 현안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신고 활성화(연중)
 - ※ 부패행위(3~6월), 이해충돌방지(6월), 복지보조금(5~8월), 공익침해(5월, 9월) 등
 - (실태조사) 공공재정 부정수급이 빈발하는 3대 분야(△보건·복지, △고용·노동, △산업자원) 집중관리를 위해 기획 실태조사 실시(연중)

(3)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

□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 제고

- (실태점검) 보조금·출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제재(부정이익의 5배 이내) 현황 반기별 점검 및 후속 조치*
 - *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처분 다수발생분야, 외부 지적분야 등 추가점검
- (제도개선) 자진신고 유형별 제재부가금 감면 합리화(100%감면→50~100%), 단순 오지급 환수(부정이익+이자) 시 이자는 제외 등 법 개정 추진

□ 공기업 등 경영 투명성 제고

- (지침서 개발·지원) '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*(K-CP)'을 개발, 교육·컨설팅을 통해 공기업 등의 K-CP 자율실천을 적극 지원
 - * 국제적 반부패 규범 강화 및 EU ESG공시 등에 대한 공기업 대응력 강화 목적
- (교육과정 신설) 청렴연수원에 공기업 등 대상 청렴윤리경영 과정 신설·운영, 자체교육 지원을 위한 '표준 교육과정' 개발
 - ※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공직유관단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추진

②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적 권익 구제

(1) 국민이 체감하는 고충민원 해결

□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

- (서민피해 집중분야 해결) 주거, 복지, 세무·금융 등 서민계층의 고충민원 발굴을 강화하고, 적극적 구제 노력 전개
 - ※ 권역별 순회상담 실시 및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
- (달리는 국민신문고)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소외지역, 취약계층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한 지역형·맞춤형 '달리는 국민신문고' 운영
 - ※ (지역형)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·벽지 등 대상 ('21) 31회 → ('22) 40회
 - (맞춤형) 공공임대주택,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대상 ('21) 60회 → ('22) 60회
- (기동컨설팅)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 대상 '기동해결 특별컨설팅'을 통해 원인별 대처방안 상담 및 맞춤형 원스톱 고충해소 추진(연 12회)
 - ※ 전문조사관이 현장을 방문, 인허가, 금융·세무 등 상담 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결 지원

□ 집단민원 조정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

- (선제적 집단민원 해결) 장기화된 갈등 사안, 대규모 집단민원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갈등현안*을 중점과제로 선정해 해결방안 마련
 - * 2개 이상 다수부처 관련, 추정 소요예산 50억원 이상, 사회적 갈등 사안 등
- (제도마련) 전문적·효율적 조정을 위한 「집단민원조정법」* 제정 추진
 - ※ 관련 의원발의안 2건 정무위 법안2소위 계류 중

□ 빈발민원 기획조사를 통한 고충민원 발생 예방

- 분야별·유형별 빈발·반복민원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민원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해소
 - 접수·처리한 고충민원에 대한 분석, 달리는 국민신문고 및 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추진과제 발굴
 - ※ (기획조사 예시)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군인 2,048명의 전사·순직 결정이 유가족에게 통보되지 못하고 있음 → 국방부, 국가보훈처, 권익위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편성, 유가족 탐문 및 예우·지원 추진

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확대 및 내실화

- (설치 확산) 지자체에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*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
* 지역민원 처리·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자체에 설치
- (운영 내실화) 신규 설치 지자체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, 기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우수 사례 공유·확산*
* ‘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’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(’20.9.) 및 협의회 개최(연 2회)

□ 전문 음부즈만 제도(’06년부터 운영) 활성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

- (경찰음부즈만 역할 확대)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 경찰권이 제대로 작동하여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음부즈만 역할 적극 수행
※ 군사검찰·경찰, 특별사법 경찰의 수사·조사 단속 민원을 권익위 경찰음부즈만이 통합 처리
- (국방음부즈만 내실화) 입대에서 제대까지 군복무 전기간에 걸쳐 안심하고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*를 강화하고, 홍보·인식 제고
*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, 사건 초기부터 ‘전문조사관’을 지정·운영하고 현장 조사 강화
※ 군 성폭력·가혹행위 등과 관련된 신고의 경우, 공익신고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처리

□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·처리

- (종합민원상담창구 운영) 민원의 종류나 민원처리 소관기관과 관계없이 한 곳에서 모든 민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(방문·온라인·콜)
- 다수기관 복합민원을 공직자(중앙부처·공공기관), 민간전문가(변호사·노무사 등) 등이 합동 상담하고,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협의·조정
- (대통령실 서신민원 처리지원) 서신민원의 국민신문고 등록, 소관기관 분류·이송, 통계관리 및 중요민원 발굴·관리 등 실시
- (정부콜센터 통합·연계)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각 부처 콜센터와 110의 번호통합 및 시스템 연계 추진(현재 34개 기관 42개 번호 통합·연계)
※ (국민콜110) 정형·반복적인 일반민원에 대해 1차 상담 → (각 부처) 법령 해석, 사건의 진행과정 등 전문민원을 2차 상담

(2) 국민 중심의 행정심판 제도 운영

□ 국민이 편리한 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

- (행정심판기관 통합) 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의 각 기관별 의사결정 구조, 인력운용 현황, 통합의 장·단점 등을 분석하여 단계적 통합 추진
※ 통합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('22.8.~12월), 법개정안 마련(~'23.6.월)
- (온라인 시스템 통합)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·처리 시스템을 일원화 하여 한 곳에서 청구·진행상황 확인·사건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구현
※ 123개(일반 57, 특별 66) 심판기관 중 74개가 '행정심판 허브시스템' 이용중(60.2%)
※ 허브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해 정보화전략계획(BPR/ISP) 수립('23.1월~6월)

□ 행정심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

- (독립성 보장) 행정심판 심리·재결 과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의 신분을 법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
- (전문성 강화) 행정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·의료·산업·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행정심판위원 자격을 개방
※ 통합의 방향에 따라 위원수 확대 및 분야별 전문가 공모 확대 등

□ 적극적인 행정심판 제도 운영

-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에 따른 권익침해도 적극 판단, '일부 인용' 및 '변경재결'을 적극 활용하여 인용률 제고
※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과징금·영업정지 부과처분 등 분야에서 처분의 감경 적극 추진
-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한 조정신청권 신설 등 조정제도 적극 활용을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 사각지대 해소
※ 조정제도는 현재 보훈사건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일반사건으로 확대 실시('21년 기준 보훈사건 18건, 일반사건 4건)
- 사회·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서 작성부터 법률전문가가 조력하도록 개선
※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: 기초생활·기초연금·장애인연금 수급자,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,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등

③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·제도 완성

(1)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·적극적 이슈 대응 및 정책개선 지원

□ 범정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

- AI 국민신문고로 국민의 접근성 개선 및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
 - 지자체, 사립대학, 공공기관의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 추진
 - ※ 243개 지자체 중 국민신문고 이용 186개, 서울 등 다른 시스템 이용 57개
 -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실태 점검·평가로 민원서비스 개선 유인
 - ※ 평가대상 : 306개 행정기관(중앙 46, 교육청 17, 광역 17, 기초 226)
- ‘국민생각함’을 통한 정책의견 수렴과 참여 활성화
 - 새정부 정책기조 관련 안건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후 정책방향 제시, 국민패널 운영, 청(소)년 정책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민 참여 유도
 - 국민생각함 우수 안건의 발굴·숙성을 통해 정책반영 강화
 - ※ 분기별 우수 안건 선정(국민선호도 조사), 전문가 자문, 제도개선 연계

□ 빅데이터 분석·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선도

- 주요 현안 정책 및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에 대한 민원 분석을 통해 정책 및 제도개선 지원
 - ※ (예시) 코로나19(‘20.2~5.), 승차 구매점(‘21.1.), 배달앱(‘21.3.), 친환경차(‘21.4.) 등
- 급증·확산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예보*발령으로 관계기관의 선제적 대응 유도 및 민원 확산 방지
 - ※ (예시) 코로나19 백신(‘21.2.), 고용·산재보험 착오송금 반환(‘21.7.), 한파(‘21.12.) 등
- 국민(산·학·연·스타트업 등)이 직접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연구·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AI기반 빅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추진
 - ※ 데이터 안심구역 설계안 마련 등 정보화 전략계획(BPR/ISP) 수립(‘21.6.)
- 다양한 외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민원 데이터 활용도 강화
 - ※ 한국언론진흥재단(‘19.6.), 포항공대(‘20.6.), 국회사무처(‘22.4.) 등 업무협약 체결

□ 국민제안의 적극적 정책 반영으로 국민체감도 제고

- 정부 내 다양한 채널로 분산되어 있는 제안·소통 창구를 대통령실 ‘국민제안센터’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·통합 운영
 - ※ 국민제안 통합플랫폼 운영(6.23) : 국민청원+당선인에게 비란다+국민생각함+광화문1번가
- ‘국민제안센터’를 통한 제도개선 적극 추진
 - 대통령실에 신청된 국민제안 전부를 검토 대상으로 하되, 불채택 제안(재심사 단계에 있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제안)의 검토도 강화
 - ※ '21년 기준 국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 신청 건수 : 173,900건(1일 평균 477건)
 - 불채택된 제안 등에 대하여 제도개선,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대상, 고충민원 과제로 분류* 후 처리
 - * 정책화 과제→제도개선, 즉시처리→적극행정, 집단·갈등 민원→고충민원
 -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*은 제도개선 우선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의견 적극 반영
 - *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, 취약계층 애로, 소기업·소상공인 불편 사항 등 국민생활과 연관되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

< 국민제안의 제도개선 검토 우선 추진 과제(예시) >

- ▲ (규제혁신) 다수부처 관련 덩어리 규제, 행정편의적 규제 등
- ▲ (취약계층 애로) 영유아, 청년, 장애인, 어르신, 다문화 가정 관련 사항
- ▲ (기업활동 지원) 기업규제, 소기업, 소상공인, 농어업인 등 애로사항
- ▲ (생활밀착) 안전, 주거·복지, 보건·의료 분야 등 생활속 불공정 해소

- 대통령실(국민제안비서관실)과 협업으로 ‘국민제안현안조정회의’를 통해 국민제안의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관리 등 점검 강화(매월)
 -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과 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‘국민제안 정책 TF’ 구성·운영(7월~)

(2) 부패·불공정 해소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·제도 개선

□ 부패 및 고충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

- 사회 전반의 투명성·공정성을 저해하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 및 예산낭비·민관유착 등 구조적 부패 관행의 개선

(생활속 불공정)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('21), 도서지역 생활물류기본권 증진('22)
 (예산낭비) 공직유관단체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관행 개선('20),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투명성 제고('21)
 (민관유착) 공무원 등 채용공정성 강화('19),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투명성 제고('21)
 (사각지대)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('21), 대중골프장 운영 관리·감독 강화('21)

- 빈발민원 분석 등을 토대로 일자리·주거·의료 등 민생안전 분야,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국민생활 밀착과제 추진

(일자리)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 불합리 개선('20),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('21)
 (생활안전)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 열람제한제도 개선('20), 자연재해피해 합리적 복구방안('21)
 (주거복지)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('21),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('22)
 (보건의료) 가정배출 폐의약품 수거·처리 등 관리개선('20),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('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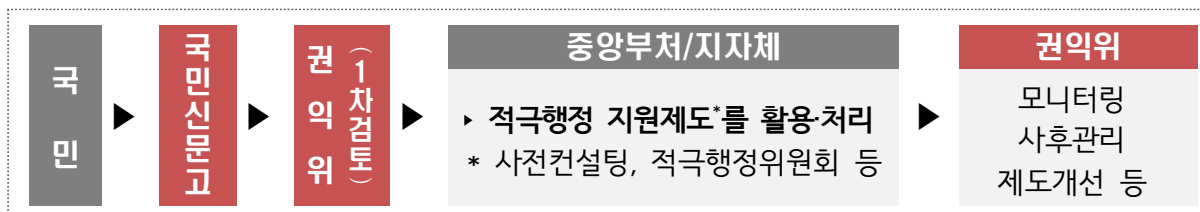
-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, 이행저조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이행독려 수단을 활용해 권고과제 관리

□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통한 정책개선

-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 지원

※ 청년세대에 불합리한 사항, 기업·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어려움, 코로나19 민생회복, 국민의 생활속 불편사항 등 개선

< 적극행정 국민신청 처리절차 >



※ 신청대상 : 민원/국민제안을 기 제출했지만 법령 불명확 등으로 거부/불채택된 사안

- 소극행정 예방을 위해 소극행정 신고처리결과 점검 강화

※ 권익위가 사실관계 파악하여 소관기관에 재조사, 업무처리 방식개선 등 조치권고

Ⅲ. 주요 현안 사항

①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(국정과제)

□ 추진 배경

-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국민 불편, 행정 비효율 및 독립성·객관성 훼손 우려* 발생
 - * 특별행정심판기관 대부분은 처분청의 상급 중앙부처에 설치
- ONE-STOP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편의 제고 및 기관·온라인 시스템 통합 운영을 통한 조직·인력·예산 효율성 극대화 필요

□ 주요 내용

- 개별법에 따라 설치·운영 중인 각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조직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 위원회에서 운영
 - 특별행정심판기관(66개)의 특성, 의사결정구조, 운영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 검토·추진
 - ※ 독립성이 요구되는 일반행정심판기관(헌법기관, 인권위 및 지자체 행정심판기관 등)은 제외
 - 전체 행정심판기관(123개)의 심판청구·사건처리 온라인 시스템 통합
 - ※ 현재 123개 기관(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포함) 중 74개 기관(60.2%)이 온라인 허브시스템을 이용, 별도 시스템 운영기관은 우선 연결(link) 후 단계적 통합

□ 추진 계획

- 'ONE-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통합방안' 연구용역('22.8~12월)
- 「행정심판법」 개정안 마련, 공청회 개최 및 개정안 국회제출(~'23.12월)
-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BPR/ISP('23년) 및 통합 완료('24~'25년)

②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(국정과제)

□ 추진 배경

-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관문인 채용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, 채용비리를 근절해 반칙 없는 공정사회에 대한 신뢰 제고 필요
 - ※ 최근 4년('18~'21)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로 총 5,914건의 채용비리 적발
-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보다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운영 및 실태점검 등을 위해 전담조직 구축 필요

□ 주요 내용

-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'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'*를 통해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추진
 - * 임시·한시 조직인 현재의 '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'을 확대·개편해 상설 조직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행안부·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 필요
-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·처리 및 공정채용 제도 운영 기능 강화
 - (채용비리 근절)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단속·점검, 채용비리 신고 접수·처리 및 실태조사 등 채용비리 조사·점검 강화
 - (공정채용 제도) 공공부문 공정채용 제도 보완* 및 교육·컨설팅 추진
 - * 행정기관·지방의회 비공무원(공무직 등) 공정채용 기준(표준 지침) 마련·적용 등

□ 추진 계획

- 상설조직인 통합신고센터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·직제 반영('22.하)
- '22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(~10월) 및 신고사건 접수·처리(연중)
- 공공기관 공정채용 제도 보완 및 교육·컨설팅('22.하)